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알리안츠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 [주식형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11. 11. 19 - 2012. 11. 18
- 라. 집합투자업자: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유진투자증권, 우리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, 에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증권, NH농협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메릴린치증권서울지점, 하나대투증권, 아이비케이투자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우리은행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경남은행, 외환은행, 기업은행, 한국씨티은행, 부산은행, 홍콩상하이은행, 한화생명, 교보생명, 대신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현대증권, 대구은행,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7.17	제 3 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알리안츠 RCM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[주식]"이라 한다. (이하 생략)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알리안츠 RCM 브릭스 증권 모두자신탁[주식]	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알리안츠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[주식]"이라 한다. (이하 생략)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두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알리안츠 브릭스 증권 모두자신탁[주식]
2012.07.17	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알리안츠 RCM 브릭스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알리안츠 브릭스 증권 모두자신탁[주식]

		증권 모두자신탁[주식](이하 생략)	(이하 생략)
2012.07.17	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알리안츠 RCM 브릭스 증권 모두자신탁[주식]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1. 알리안츠 브릭스 증권 모두자신탁[주식]의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(이하 생략)
2012.07.17	제 49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
2012.09.05	제 49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⑧ 제 6 항 및 제 7 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이하 이항에서 “보고서”라 한다)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	⑧ 제 6 항 및 제 7 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이하 이항에서 “보고서”라 한다)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위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

		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	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 일자	변경 사유	성 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2012.05.29	말소	안지환	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007.7~현재 알리안츠자산운용주식운용팀 2002.5~2007.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 채권운용팀 등 경력 16년	2109000566
2012.05.29	신규	김은우	서울대학교 응용학과, KAIST 경영대학원 금융공학 2007.01~2008.08 교보투자신탁운용 인덱스/퀀트운용팀 운용역 2008.08~현재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주식운용 2 팀 주식운용역 등 경력 6년	2109001316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 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삼정회계법인	1년	143 만 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와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구 및 자집합투자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RESTRICTED - PUBLIC_HSS FS SEL